

고양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고양시의회의회장 이 길 용



2021년 12월 30일

고양시의회 훈령 제43호

고양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에 따른 고양시의회 회의록의 작성·발간·배부·보존·열람 및 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의록의 구분) 회의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“보존회의록”이란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46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하여 고양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.
2. “공개회의록”이란 고양시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및 주민에게 공개 또는 공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.
3. “비공개회의록”이란 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록을 말한다.

4. “전자회의록”이란 공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주민에게 공개한 회의록을 말한다.

제3조(회의록 작성) 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및 특별위원회 회의록은 규칙 제59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재한다.

②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 중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각종 보고서·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.

제4조(발언 등의 기재) ① 의장 또는 위원장(이하 “의장 등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이나 발언한 의원·공무원, 그 밖의 발언자(이하 “발언자”라 한다)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도 의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.

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후 계속하여 발언한 부분도 기재한다.

③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 게재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장내소란 등으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“(청취불능)”이라 표기한다. 이 경우 의장 등에게 회의경과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할 수 있다.

⑤ 개의된 이후에 기록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의시간과 회의경과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의장 등에게 확인하여 기재한다.

⑥ 법조문·숫자 등 명백한 사실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다른 발언자의 정정발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.

⑦ 의장 등이 기록중지를 명한 경우 기록을 중지한 동안의 발언은 기재하지 않는다.

제5조(보존회의록의 작성·보존 및 열람 등) ① 의장은 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 보존회의록을 영구 보존한다.

② 의원이 보존회의록 중 공개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은 부분을 열람·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회의록 열람·복사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비공개회의록의 보존·열람) ① 의장은 비공개회의록을 원고로써 보존하되 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. 다만,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공개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(전자회의록의 공표)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 원고를 완료한 후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표해야 한다.

제8조(발언내용의 불게재) ① 의장은 회의록 원고의 내용이 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록 발간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중복발언이 강조의 의미가 아닌 경우 중복되는 발언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9조(참고문서 등의 게재) ① 의장 등은 의원이 발언보충서 또는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 요구한 경우 이를 허가한 후 회의록에 게재한다. 다만, 그 내용은 회의 또는 발언에 관계되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.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보충서 또는 참고문서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참고문서·발언보충서 게재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규칙 제45조제1항제15호 및 제5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.

제10조(자구의 정정) 발언자가 규칙 제47조에 따라 자구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구 정정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(회의록 원고의 열람·복사)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 원고의 열람·복사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을, 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·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.

제12조(녹음) ①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.

② 녹음파일은 5년간 보존하되 중요한 사항은 5년마다 재복사하여 보존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회의록 게재 신청서

제 회 고양시의회(○○회) 제 차 본회의(○○ 위원회)(20 . .)
회의록에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33조제2항 및 「고양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 청 인 고양시의회 의원 :

①

고양시의회의장(위원장) 귀하

보존회의록 열람·복사 신청서

제 회 고양시의회(○○회) 제 차 본회의(○○ 위원회)(20 . .)
보존회의록 중 공개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은 부분을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48조제2항 및 「고양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열람·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 청 인 고양시의회 의원 :

①

고양시의회의장 귀하

열람·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
* “전재”란 공개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.

비공개회의록 열람 신청서

제 회 고양시의회(○○회) 제 차 본회의(○○ 위원회)(20 . .)
비공개회의록을 「고양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
제6조제2항에 따라 열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

신 청 인 고양시의회 의원 :

①

고양시의회의장 귀하

열람을 허가받은 의원은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이
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
* “전재”란 공개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.

참고문서·발언보충서 게재 신청서

제 회 고양시의회(○○회) 제 차 본회의(○○ 위원회)(20 . .)
회의록에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45조제1항제14호 및 「고양시의회
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별도 붙임
의 참고문서·발언보충서를 게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

20 . . .

신 청 인 고양시의회 의원 :

①인

고양시의회의장(위원장) 귀하

자구 정정 요구서

제 회 고양시의회(○○회) 제 차 본회의(○○ 위원회)(20 . .)
회의록 중 「고양시의회 회의규칙」 제47조 및 「고양시의회 회의록 발
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구정정을
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정사항

면	행	오	정

20 . . .

신 청 인 고양시의회 의원 : (인)

고양시의회의장 귀하

회의록 원고의 열람·복사 신청서

제 회 고양시의회(○○회) 제 차 본회의(○○ 위원회)(20 . .)
아래 회의록의 원고를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48조제2항 및
「고양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제1항에
따라 열람·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 청 인 고양시의회 의원 :

①

고양시의회의장(위원장) 귀하

열람·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「고양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48조제3항에 따라
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
* “전재”란 공개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.

고양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

□ 제안이유

- 회의록 기재 내용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회의록 작성방법과 보존, 열람 등을 규정함(제4조부터 제6조까지, 제11조).
- 나. 전자회의록 공표를 규정함(제7조).
- 다. 회의록의 불게재 사항과 자구의 정정 내용을 규정함(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라. 회의록의 녹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2조).